

2023년 기술본부 및 사장직속부서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1. 감사목적

본 감사는 기술본부 및 사장직속부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업무오류 및 비능률적인 요소를 시정·개선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영목표 달성과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음

2. 감사대상 및 방법

가. 감사대상 : 기술본부 및 사장직속부서

나. 감사방법 : 서면·현장 감사실시

3. 감사범위 : 2021년 ~ 2023년 9월까지 추진한 업무

4. 감사중점

가.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사업의 이행실태

나. 재고자산, 고정자산, 예비품 등 자산관리업무 적정성

다. 소극행정 및 규제개혁 저해행태 여부

라. 업무 수행시 법령·사규 준수여부 및 불합리한 관행 유무 등

5. 감사기간 및 인원

가. 감사기간 : 2023. 10. 16. ~ 11. 10. (기간중 19일)

나.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7명

II.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원)		비고
계	경고	주의	시정	통보	권고	현지시정	계	주의	계	회수	
18	1	6	1	8	1	1	-	-	1	1 (1,835,565원)	

2. 지적사항 세부내역

일련 번호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1	<p>■ 예산의 목적 외 사용</p> <p>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편성 기준 및 예산의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집행하여야 하고,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p> <p>하지만, 노후된 레일코팅시스템(2대)의 교체 비용을 자산취득비(선로설비)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구매)함에 있어, 구매 비용에 기 운용중인 레일코팅시스템(교체대상)의 수선 및 이설 비용을 포함하였으며, 차량기지 분기기 시설물 교체는 대수선에 해당하기에 시설비 예산과목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저장품 예산과목으로 발주하여 집행하였음</p> <p>【조치요구 사항】</p> <p>예산편성 기준 및 예산의 과목 구분에 따른 집행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주의” 조치 요구</p>	주의
2	<p>■ 계약이행 완료검사 부적정</p> <p>3억원 이상의 물품 제조의 경우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준공 및 납품 검사 결과보고에 따른 전결권자 부재 시에는 직제 순위에 따라 차하위자가 대결 처리를 하되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함</p>	주의

연예 내역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p>그런데, 3억원 이상의 본선환기탑 전기집진장치 제작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독의 직무와 감사의 직무를 동일인이 겸하여 제작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전기집진장치 제작설치 2차의 경우 준공 및 납품 검사 결과 보고 시 전결권자인 팀장이 병가 중이라는 이유로 차하위자인 사업의 감독자가 계약금액 21억을 집행하는 중요한 납품검사에 대해 차상급자(부서장)에게 보고 하지 않고 기안 후 대결 처리하였음</p> <p>【조치요구 사항】 계약이행 완료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요구</p>	
3	<p>■ 용역사업 추진 시 업무처리 부적정</p> <p>엔지니어링사업자와 기술용역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고시금액 2억2천만원 이상의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사전에 선정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p> <p>그런데 ○○팀에서는 고시금액 이상인 “광주도시철도 1호선 전송설비 개량 책임감리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보통신공사 감리업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이 개정중이라는 이유로 「엔지니어링산업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p> <p>【조치요구 사항】 용역사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요구</p>	주의
4	<p>■ 개인보호구 관리 소홀</p> <p>「안전보건매뉴얼 개인보호구 관리지침」 5. 책임과 권한 1)사용부서(2)에 따르면 소속부서내의 안전보호구는 관리할 취급책임자를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중 총 32회의 점검을 누락하였으며,</p> <p>「동 지침」 6. 업무절차 1)에 따르면 보호구 구매시 안전관리자에게</p>	주의

연예 번호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p>적격품에 대한 검토 의뢰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22.9.1일자 안전화 발주 품의시 안전관리자의 적격품 검토를 누락함</p> <p>【조치요구 사항】 개인보호구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요구함</p>	
5	<p>■ 근태관리(자녀돌봄휴가 사용) 소홀</p> <p>직원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취업규칙 및 복무관리지침에 의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장에게 신청·사용해야하고, 소속장은 소속직원의 복무 상황 점검 및 확인의 의무가 있음</p> <p>그런데, 자녀돌봄휴가 사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자녀돌봄휴가 사용 관련 증빙서류 없이 자녀돌봄휴가의 사용하거나 복무관리지침에 의한 자녀돌봄휴가 사유가 아닌 목적 외 사용 사례가 발견되었음</p> <p>【조치요구 사항】 소속직원의 근태관리(자녀돌봄휴가 사용)를 미흡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요구함</p>	주의
6	<p>■ 준공업무 소홀</p> <p>「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에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p> <p>그런데 △△팀에서는 열차제어컴퓨터(TCC) 유지보수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 완료 후 준공처리 절차에 따라 계약업체로부터 준공계를 접수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하나, 준공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준공처리를 하는 등 준공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p> <p>【조치요구 사항】 준공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요구함</p>	주의

연예 번호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7	<p>■ 예비품 관리 소홀</p> <p>「물품관리내규」 제48조(보관의 원칙)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12.7.1 유지관리부품의 확보에는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품에 대하여 성능보존이 가능하도록 보존 및 정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p> <p>그런데, ☆☆팀에서는 2022년 전동차 000편성 중정비 전반검사시 전기연결기 불량으로 교체가 필요하여 보관중이던 예비품으로 교체하면서 성능보존이 되어 있지 않은 전기연결기(커넥터 불량품)로 교체 후 기능시험을 실시하여 열차종합제어장치(TCMS) 전자회로기판(VCPU보드) 6EA에 고장을 발생시킴</p> <p>이에 동일한 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관중인 예비품의 성능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였으며, 전동차 검사 중 발생한 고장에 대한 보고절차 및 사례 전파교육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였음</p> <p>【조치요구 사항】</p> <p>예비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한 사항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요구함. 보관중인 예비품 성능 확보방안 및 보고절차, 전파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p>	경고 통보
8	<p>■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소홀</p> <p>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함</p> <p>그런데, 「역사 영상감시시스템 개량공사」, 「차량기지(용산,옥동) 영상감시 개량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중 ‘공사안내표지판’ 등은 사용할 수 없는 내역임에도 사용내역 확인을 소홀히 하여 감액조정하지 않고 총 1,835,565원의 공사비가 초과 지급됨.</p> <p>【조치요구 사항】</p> <p>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확인 소홀로 초과 지급된 공사금액을 회수하시기 바람</p>	시정 (회수)

연예 내역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9	<p>■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업무 미흡</p> <p>철도시설관리자는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위해 세부적인 시행 기준(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성능평가 방법, 대상, 결과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자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야별 외부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 설치계획을 위원회 총괄관리부서장(기획조정처장)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거쳐야 함</p> <p>이에,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는 일정한 주기마다 실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기준(안)에 대한 사규화 및 자체 위원회 설치에 따른 절차 준수와 심의 사항에 대한 객관성·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부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재구성이 필요함</p> <p>【조치요구 사항】</p> <p>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기준(안)을 사규화하시기 바라며, 외부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설치계획을 수립 작성하여 위원회 총괄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통해 자체 위원회를 재구성하시기 바람</p>	통보
10	<p>■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미흡</p> <p>1개월 이상의 공사, 용역 도급사업 추진 시 수급인으로 인하여 안전보건 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작업시작 전 사업장의 위험요소들과 시설의 안전수칙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고,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시행, 매월 1회 이상 협의체 회의 개최, 분기 1회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함</p> <p>하지만,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외 5건을 추진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계획 수립 및 작업장 순회점검, 협의체 회의 개최 등 안전·보건조치를 정상적으로 실시하였으나, 협의체 운영실적 미제출 등 일부 사항을 업무 착오로 인해 이행하고 있지 않았음</p> <p>【조치요구 사항】</p> <p>도급사업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람</p>	통보

연예 번호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11	<p>■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서류(산출내역서) 확인 소홀</p> <p>「광주도시철도공사 엘리베이터 개량공사」 설계변경 및 「2022년도 위생설비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기성금액 정산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대해 검토를 소홀히 하여,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를 예정가격단가보다 높게 적용하고,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산출내역서보다 낮게 적용하였으며, 계약당사자가 산출내역서 제출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대하여 조정없이 반영하여 제출하였으나, 기성금액 정산시 낙찰율이 반영되어 낮아진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반영하여 공사에 피해는 없으나 계약상대자와 불합리하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음</p> <p>【조치요구 사항】</p> <p>관련 법규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람</p>	통보
12	<p>■ 정수물품 관리 소홀</p> <p>「정수물품 운용지침」 따르면 정수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정수책임 및 배정절차를 준수하여 취득하여야 하고, 정수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사례는 지양하도록 명시되어 있음</p> <p>그런데, 정수를 초과하여 구매한 것과 정수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음</p> <p>【조치요구 사항】</p> <p>정수물품 운용지침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정수책임 및 정수조정을 완료하시기 바람</p>	통보
13	<p>■ 공기호흡기 압력용기 검사 및 폐기절차 준수</p> <p>「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에 따른 법정검사 후 발행된 용기 재검사 성적서에 신청자가 공사가 아닌 검사를 대행한 충전업체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공사의 압력용기임을 확인할 수가 없었으나, 첨부된 검사 결과표에 용기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공사의 압력용기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음</p> <p>또한, 공기호흡기는 공사의 자산으로 등재된 물품으로 파기시에는 「물</p>	통보

연예 면역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p>품관리내규」 제54조(불용결정의 절차)에 따라 불용결정 후 불용품 파기 처분을 하여야 하나, 기계환경팀에서는 공기호흡기 압력용기 파기 처분을 먼저 시행 후 공사 불용절차를 통하여 불용처리를 완료하였음</p> <p>【조치요구 사항】 공기호흡기의 충전, 법정검사, 파기절차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p>	
14	<p>■ 개인영상정보 관리 및 처리절차 보완</p> <p>「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제3자(경찰, 소방, 언론기관 등)에게 관련법령에서 허용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시 공사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시 요청자로부터 공문서를 접수하고 신분을 확인한 다음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통지서를 발급 후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음</p> <p>이때 발급되는 통지서는 「개인정보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요구할 때 발급하는 통지서로 제3자 정보제공과는 맞지 않는 서식이었음</p> <p>또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시 정보주체 열람과 제3자 제공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열람으로 표시하고 있었으며, 파기예정일자도 동일하게 작성하고 있음</p> <p>【조치요구 사항】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지침」을 참고하여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절차를 수정하시기 바람 개인영상정보 처리절차 및 관리대장 작성요령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람</p>	통보
15	<p>■ 의약품 재고관리 프로세스 마련</p> <p>현재 의약품(구급 소모품 포함) 구매시 사용실적 및 재고량을 고려하지 않고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의약품 사용 실적이 저조하여 다량의 의약품이 유통기한 만료로 폐기 처리되고 있음</p> <p>또한, 폐의약품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는 바 적</p>	통보

연예 내역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p>정한 의료폐기물 관리는 물론 의약품 적정 재고 관리차원에서 폐기되는 의약품에 대한 폐기 절차를 기록 유지할 필요가 있음</p> <p>【조치요구 사항】 효율적인 의약품(의약소모품 포함) 재고 관리를 위하여 수급관리체계(폐기 절차 포함)를 마련하시기 바람</p>	
16	<p>■ 전동차 순환예비품 지정 재검토</p> <p>「전동차 및 검사장비 관리내규」 제11조(순환예비품 운용)에 따라 공기 압축기 외 7종 79점을 순환예비품으로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음</p> <p>또한, 「철도안전법」 제27조(철도용품 형식승인)에 따라 국통교통부가 승인한 제동제어장치 등 13종의 형식승인 대상품과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7조의 1에서 정하는 철도안전에 필요한 판토품 등 42종의 주요장치에 대하여 핵심부품으로 관리하고 있음</p> <p>관리중인 전동차 핵심부품 중에는 판토품 등 수선시일이 장기간 소요되는 부품, 제동제어장치 등 보관 중 성능 확인이 꼭 필요한 부품이 존재하였음. 이러한 부품은 전동차 순환예비품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만 전동차 순환예비품으로 지정되지 않고 운용되고 있어 사고예방 및 정비 효율 증대를 위하여 현재 전동차 정비환경을 고려하여 순환예비품 지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p> <p>【조치요구 사항】 사고예방 및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현재 전동차 정비환경을 고려하여 관리중인 예비품에 대한 순환예비품 지정에 대하여 재검토하시기 바람</p>	권고
17	<p>■ 철도 운행안전관리자 업무 수행을 위한 양성교육 미흡</p> <p>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 및 공사 등을 외주나 자체적으로 시행할 때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자격을 갖춘 철도 운행안전관리자를 작업 또는 공사 구간 별로 지정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을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사 자체 교육(8시간 또는 경력 3년 이상 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p> <p>하지만, 2021년 12월 입사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자체 양성교육(8시간</p>	현지시정

연계 면역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p>이상)을 실시하여 철도운영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2022년 12월 입사 신규직원에게는 양성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p> <p>이와 관련하여, 해당팀에 철도운영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2022년 신규직원에 대해서 자체 양성교육 실시를 요구하였으며, 감사 기간 내 대상자에 대한 양성교육을 완료하였음</p> <p>【조치요구 사항】</p> <p>신규직원에 대해서 철도운영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자체 양성교육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p>	